

2024년도 K-스타트업 센터 창업기업 모집 공고

K-스타트업 센터(KSC) 사업 참여기업의 해외 창업생태계에 안착을 위한 글로벌 유망 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2월 27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※ K-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 (SCI)를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. 실명정보가 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(개명인, 외국인,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에는 사전에 SIREN24를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)
* K-Startup 누리집 - 고객센터 - 온라인매뉴얼 - 일반매뉴얼 - K-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

1 사업개요

- 사업목적** : K-스타트업 센터(KSC) 프로그램을 통한 해외 시장 안착을 통한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
- 지원대상** : 투자유치(국내·외) 또는 진출지역의 매출(수출)실적이 있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(단, 신산업창업분야 중소기업은 업력 10년이내)
- 지원내용** : 해외진출 프로그램 및 해외진출자금 60백만원
- 협약기간** : '24. 6. 1. ~ 11. 30 (예정)
- 선정규모** : 80개사 내외

< 프로그램형 운영국가 >

구분	이스라엘	인도	미국	싱가포르	스웨덴	핀란드	프랑스	베트남
액셀러레이터	Investable Solutions	The Circle	Think Creative	Startup bootcamp	Epicenter	Vertical	HEC Paris	VSV Capital
주관기관	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	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	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	한국벤처캐피탈협회	펜 벤처스 코리아	한국벤처캐피탈협회	펜 벤처스 코리아	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
특화업종**	의료바이오, 디지털헬스	스마트제조, 에듀테크	디지털전환, 모빌리티	핀테크, 블록체인	AI(인공지능) 친환경	에너지 게임, 데이터 실증	문화콘텐츠, 스마트시티	이커머스, O2O서비스

* 2개의 국가(1지망, 2지망)를 선택하여 신청하되, 선정 시 1지망 우선 적용

** 모든 국가에 대해 업종 구분없이 신청가능하며, 특화업종의 경우 국가별 평가 시 우대

2

신청자격 및 요건

□ 신청자격

- 공고일 기준 업력 7년* 이내 창업기업** 중, 투자를 받은(국내·외) 이력이 있거나 진출지역의 매출(수출)실적이 있는 창업기업

* 사업자등록증 개업년월일 2017년 2월 27일인 자부터 신청 가능

** 단,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(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)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**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** 신청가능

< 신산업 창업 분야 >

①	인공지능	⑩	자율주행차	⑲	스마트홈
②	빅데이터	⑪	전기수소차	⑳	신재생에너지
③	5G+	⑫	바이오	㉑	이차전지
④	블록체인	⑬	의료기기	㉒	CCUS(탄소포집·활용·저장)
⑤	서비스플랫폼	⑭	기능성 식품	㉓	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
⑥	실감형콘텐츠	⑮	드론·개인이동수단	㉔	우주
⑦	지능형 로봇	⑯	미래형 선박	㉕	차세대 원전
⑧	스마트 제조	⑰	재난/안전	㉖	양자
⑨	시스템반도체	⑱	스마트시티	㉗	사이버 보안

- ▶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기준
- ▶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
- ▶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자이자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1항 및 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
- ▶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'신청자격'에 해당되고,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 되지 않아야함
- ▶ 다수의 사업자등록증(개인, 법인)을 보유한 경우,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를 결정([참고1] 「창업여부 기준표」를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확인)

- (투자 증빙) 개인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사, 투자금, 계약일 등이 포함된 투자계약서 제출(창투사, 신기사, 은행, 증권사, 자산운용사, PEF, 엔젤투자조합 등)
- (매출 증빙) KSC 8개국 또는 인접국가 매출(수출)실적 증빙 제출 (아시아·중동·오세아니아, 유럽, 남·북아메리카로 구분하며, 국내 매출은 제외)

□ 신청 제외 대상

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
< ①조건 예외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
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
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
4.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'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'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·신용회복위원회의 '재창업 자금지원'을 받은 자

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
< ②조건 예외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③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 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(기업)

④ 중소벤처기업부 '글로벌창업 지원사업' 중 동시수행 불가 사업*을 수행 중인 자(기업)

* 동시수행 불가 사업 : **민관공동창업자발교육성(TIPS 해외마케팅 지원사업), 해외실증 PoC**

** 동시수행 불가 사업과 동시 신청은 가능하나, 먼저 협약한 사업만 참여가능(다른 지원사업 협약 이후 선정된 경우 자동으로 탈락처리), 단, 중단포기자인 경우 신청불가

*** 동 사업 접수마감일 이후 3개월 내에 기 참여사업이 종료되는 경우는 신청가능(단, 선정평가 후 협약 시 협약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선정 및 협약이 불가할 수 있음)

※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·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

⑤ '19~'23년 동 사업 참여자(기업) ※ 중단(중단처분·중도포기자) 포함

* 단, 해외진출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가능(예시 : '21년 KSC 단기프로그램 수혜기업)

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(기업)

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·폐업 중인 자 (기업)

⑧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 (사업비 계좌)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(기업)

*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,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·등록이 되지 않은 자 (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, 가상화폐 거래소업, 가상화폐 개발업,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)

⑨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, 전담/겸직인력으로 참여 중인 자(기업)

⑩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(기업)

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(기업)

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□ 의무 및 역할

- 선정자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」 및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, 「동 사업 세부관리기준」,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받아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
- 선정기업은 현지 프로그램에 대표자 참여를 권장하며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참가가 어려울 경우 최소 1인 이상의 직원이 반드시 현지 체류 및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, 해외출장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
- 현지 프로그램 참가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현지에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책임은 선정기업과 참가자에게 귀속됨
 - * 현지 법규 준수, 비상 상황 등에 대비한 연락 체계 유지, 현지 질병 등에 대비하여 개인의 위생관리, 도난 등에 대한 주의 등 프로그램 외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건사고 등
- 현지 프로그램 참가자는 창업기업 대표자 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소속 임직원으로 영어 또는 현지어에 능통하여 프로그램에 전담으로 성실히 참가 하여야 함
 - * 현지 프로그램 참가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변경 혹은 일시적으로 현지 체류가 불가할 경우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, 액셀러레이터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협약 종료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나, 사업비의 유용·횡령·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(선정자)에게 있으며 지침 및

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

-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자기부담사업비(현금)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,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해당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

3 지원내용

□ **지원 내용** : 해외진출 프로그램 및 해외진출 자금(60백만원)

- **해외진출 프로그램** : 국가별 유수의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를 통한 협력 파트너사 발굴, 투자자 매칭 등 현지진출 밀착지원
- **해외진출 자금** : 프로그램 참가목적의 출장비, 인건비, 홍보비, 특허출원료, 해외법인설립비 등으로 사용 가능한 해외진출자금 지원

구분	지원 세부사항
해외진출 프로그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총 14주간(국내 2주 +온라인 4주+현지 8주)의 창업기업별 1:1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① KPI 워크숍 : 참가기업-액셀러레이터 간 면담을 통하여 프로그램 참가목표 및 세부 활동 계획 등 현지지출 KPI(목표) 최종수립 ② 진출준비 :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창업기업과 해외 파트너사 등을 매칭하고, 멘토링을 통하여 현지 진출전략 최종점검 및 수정 ③ 현지프로그램 : BM고도화, 협력 파트너사 발굴, 투자자 매칭 등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외 참여기업이 KPI 달성을 위한 현지에서의 자체 계획 수립 및 진행 ④ 성과발표회 : KSC 운영국가의 8개사의 성과발표 및 네트워킹 등 진행

구분	지원 세부사항																	
해외진출 자금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외진출자금, 홍보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 • 정부지원사업비 60백만원 내외 지원 																	
	<p>< 총 사업비 구성 ></p>		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h data-bbox="347 459 699 544" rowspan="2">정부지원사업비</th> <th colspan="2" data-bbox="699 459 1401 501">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(총 사업비의 30% 이상)</th> </tr> <tr> <th data-bbox="699 501 1050 544">현금</th> <th data-bbox="1050 501 1401 544">현물</th> </tr> <tr> <td data-bbox="347 544 699 600">총 사업비의 70% 이하</td> <td data-bbox="699 544 1050 600">총 사업비의 10% 이상</td> <td data-bbox="1050 544 1401 600">총 사업비의 20% 이하</td> </tr> </table>	정부지원사업비	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(총 사업비의 30% 이상)		현금	현물	총 사업비의 70% 이하	총 사업비의 10% 이상	총 사업비의 20% 이하									
	정부지원사업비		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(총 사업비의 30% 이상)															
		현금	현물															
	총 사업비의 70% 이하	총 사업비의 10% 이상	총 사업비의 20% 이하															
	<p>< 사업비 구성 예시 ></p>		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h data-bbox="347 689 571 732">총사업비</th> <th data-bbox="571 689 798 732">정부지원사업비</th> <th colspan="2" data-bbox="798 689 1401 732">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</th> </tr> <tr> <td data-bbox="347 732 571 775">8,572만원</td> <td data-bbox="571 732 798 775">6,000만원</td> <th data-bbox="798 732 1098 775">현금</th> <th data-bbox="1098 732 1401 775">현물</th> </tr> <tr> <td data-bbox="347 775 571 840">100%</td> <td data-bbox="571 775 798 840">70%</td> <td data-bbox="798 775 1098 840">858만원</td> <td data-bbox="1098 775 1401 840">1,714만원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 data-bbox="798 840 1098 882">10%</td> <td data-bbox="1098 840 1401 882">20%</td> </tr> </table>	총사업비	정부지원사업비	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		8,572만원	6,000만원	현금	현물	100%	70%	858만원	1,714만원			10%	20%	
	총사업비	정부지원사업비	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															
	8,572만원	6,000만원	현금	현물														
100%	70%	858만원	1,714만원															
		10%	20%															
<p>* (현물) 창업기업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 고용 인력의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,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</p>																		
<p>< 사업비 비목 예시 ></p>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331 1008 555 1050">비목</th> <th data-bbox="555 1008 1417 1050">비목 정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331 1050 555 1171">재료비</td> <td data-bbox="555 1050 1417 1171">•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창업아이템의 제품(서비스)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또는 원료, 데이터 등 무형재료 구입비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331 1171 555 1292">외주용역비</td> <td data-bbox="555 1171 1417 1292">•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을 위해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제품(서비스)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,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331 1292 555 1413">기계장치 구입비</td> <td data-bbox="555 1292 1417 1413">• 창업기업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을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를 구입하는 비용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331 1413 555 1534">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</td> <td data-bbox="555 1413 1417 1534">• 사업계획서상의 창업아이템의 현지화와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·등록관련 비용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331 1534 555 1655">인건비</td> <td data-bbox="555 1534 1417 1655">•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해외진출과 관련된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, 지급하는 급여 (대표자 지급 불가하며, 정부지원사업비의 50% 까지 계상 가능)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331 1655 555 1776">지급수수료</td> <td data-bbox="555 1655 1417 1776">•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을 위한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금전을 뜻하며, 기술이전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멘토링비 등으로 집행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331 1776 555 1897">여비</td> <td data-bbox="555 1776 1417 1897">• 창업기업 대표자와 소속 임직원이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을 준비하기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331 1897 555 1993">광고선전비</td> <td data-bbox="555 1897 1417 1993">• 창업기업 제품(서비스)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, 포장 디자인비, 포털사이트 배너광고,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비목	비목 정의	재료비	•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창업아이템의 제품(서비스)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또는 원료, 데이터 등 무형재료 구입비	외주용역비	•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을 위해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제품(서비스)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,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	기계장치 구입비	• 창업기업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을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를 구입하는 비용	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	• 사업계획서상의 창업아이템의 현지화와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·등록관련 비용	인건비	•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해외진출과 관련된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, 지급하는 급여 (대표자 지급 불가하며, 정부지원사업비의 50% 까지 계상 가능)	지급수수료	•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을 위한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금전을 뜻하며, 기술이전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멘토링비 등으로 집행	여비	• 창업기업 대표자와 소속 임직원이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을 준비하기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	광고선전비	• 창업기업 제품(서비스)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, 포장 디자인비, 포털사이트 배너광고,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
비목	비목 정의																	
재료비	•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창업아이템의 제품(서비스)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또는 원료, 데이터 등 무형재료 구입비																	
외주용역비	•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을 위해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제품(서비스)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,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																	
기계장치 구입비	• 창업기업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을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를 구입하는 비용																	
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	• 사업계획서상의 창업아이템의 현지화와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·등록관련 비용																	
인건비	•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해외진출과 관련된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, 지급하는 급여 (대표자 지급 불가하며, 정부지원사업비의 50% 까지 계상 가능)																	
지급수수료	•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을 위한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금전을 뜻하며, 기술이전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멘토링비 등으로 집행																	
여비	• 창업기업 대표자와 소속 임직원이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을 준비하기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																	
광고선전비	• 창업기업 제품(서비스)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, 포장 디자인비, 포털사이트 배너광고,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																	

4

신청 및 접수

□ 신청기간 : '24.2.27 ~ 3.27. 15시 까지

-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마감일 2~3일 이전에 'K-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'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
 - * 신청·접수 마감일 15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, 15시 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(1단계 이상 저장 과제)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17시까지 작성항목 수정,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허용됨. 마감시간 15시 후에는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
- ② '제출완료'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
-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,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

□ 신청방법

○ K-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

- ① 신청·접수 시 K-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인증 등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**사전에 홈페이지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**
 - * 기업인증 : ①공동인증서(기업용) 또는 ②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기업실명인증 후 신청 가능하므로 사전인증 필수(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)
 - ** 개인인증 :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(개인에 따라 3일 내외 소요될 수 있음), 특히 외국인, 미성년 등은 사전인증 필수
- ② 사업 신청은 신청(지원) 제외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,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
- ③ 신청 시 사업계획서 상 신청국가와 시스템 접수 상 신청국가가 상이할 경우, K-Startup 홈페이지 **시스템 접수 기준으로 진행**

□ 제출서류

제출서류	구분	주의사항	제출방식
① 사업계획서	필수	양식 작성 후 첨부	온라인시스템 업로드 * 업로드 가능 용량은 30MB로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
② 신청자격 증빙서류		신분증, 사업자등록증, 투자/매출 실적 증빙, 창업기업 확인 증빙	
③ 영문 인터뷰 발표 자료(PPT/PDF)	추후 제출	서류평가 통과기업에 한하여 별도 안내·제출	

* 사업계획서는 게시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,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누락 시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

5

평가 및 선정

□ 가점대상

< 가점 대상(중복 가점 불가하며 서류평가 시 가점 1점 적용) >

- '23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성과평가 "우수" 창업기업
- '23년 글로벌 기업 협업 성과평가 "최우수" 창업기업
- 아기유니콘 200 선정기업(투자증빙 면제)
- '24년 CES K-스타트업 통합관 멘토링 지원기업

□ 평가절차

- 평가는 ①요건검토→②서류평가→③발표평가 순으로 진행로 진행하며, 단계별 평가점수는 해당 단계만 적용(서류평가, 발표평가 점수는 개별 산정)

< 창업기업 선정 절차(안) >

①요건검토	②서류평가	③발표평가	④최종선정
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 확정	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류 평가	발표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	최종선정자 및 지원금액 심의
주관기관	해당 액셀러레이터	해당 액셀러레이터	창업진흥원

요건검토는 상시 진행(창업진흥원·주관기관)하며,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

- *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·내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평가결과는 각 단계별 평가 이후 안내 예정

□ 평가방법

- ① 요건검토 : 신청자격 및 신청제외대상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필수 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시 평가·선정대상에서 제외
- ② 서류평가 :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(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) 선정
 - * 서류평가 대상자가 2배수 이내일 경우 서류평가 생략 후 발표평가 진행 가능
- ③ 비대면 인터뷰 : 현지 액셀러레이터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온라인 영어 인터뷰를 진행하고 프로그램 참가기업을 선정

□ 평가지표

- 서류 및 발표평가는 국가별 액셀러레이터의 자체 평가지표에 따름
 - * **평가지표(안)** : 팀 구성, 비즈니스 모델, 핵심 기술 및 경쟁력, 자본 운용 및 수익 창출 계획, 영어 커뮤니케이션 역량 등

□ 최종선정

- 지원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 선정 및 창업기업별 지원금액을 최종 확정
-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관기관 혹은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
 - *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

□ 사업 운영일정(안)



*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◆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

- ①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"형법", "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", "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", "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" 등에 따라 **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**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**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**될 수 있습니다.
-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(대표자, 창업기업) 등 관련자 전원이 **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**될 수 있습니다.
-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"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" 제32조, "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"에 따라 고의,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**해당자를 고발 조치** 할 수 있습니다.

-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, 동 사업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할 수 있음

* 'K-Startup'(https://www.k-startup.go.kr) 상의 동 사업 신청자, 해당 기업의 대표자,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상 대표자는 일치하여야 함
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 또는 선정된 경우, 중소벤처기업부(창업진흥원 등)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짐

* 둘 이상의 개인 또는 사업자가 합의하고 공동으로 사업계획서를 동일·유사하게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라도, 상호 간에 사업계획서를 표절 또는 모방하여 신청한 것으로 판단하여 참여 대상 모두 동일하게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

** 동일·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

-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 - *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·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,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, 선정취소,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
 - ** 동일·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
- '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 (협약체결) 불가. 단, '24년도 이전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·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
 - ※ (주의) 동시 선정 시, 각 사업의 협약체결일 이전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 하여야 하고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함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'신청자격'에 해당하고,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
 - *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,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 - **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중 1인이 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할 경우, 향후 동 사업 협약체결자 외의 대표자도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
- 신청·접수 제한 시간까지 사업 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 가능
- 동 사업 신청자는 2024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참여가 불가

□ 평가 중 유의사항

-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,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
- 전 평가 과정에서 신청하는 창업기업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, 선정대상에서 제외
- 신청자는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안내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
-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표평가 (비대면 인터뷰)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
- 신청자격 중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유효기간 내 '창업기업확인서' 제출 혹은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
 - * 업력 및 창업기업 확인 기준 관련 서류(총사업자등록내역, 내역 상 '계속' 중인 모든 사업자등록증, 폐업사실증명원, 창업여부 확인서(창업기업용), 주주명부 등)

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선정 취소,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요건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사업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, 분할하여 지급될수 있으며 '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'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·운영됨

- 동 사업의 중간(수시)·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- 협약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
-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,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
-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「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」,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, 「동 사업 세부관리기준」, 전담·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
-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,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약,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
- 선정기업은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계좌(사업비계좌) 개설 필수 및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(회계처리)이 가능하여야 함
 - *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,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

7**문의처**

- (시스템 문의) 국번없이 1357
- (사업문의) 주관기관 담당자

< KSC 운영국가별 주관기관 담당자 현황 >

국가	주관기관명	연락처
프랑스/스웨덴	펜벤처스 코리아	02-6956-2043
미국/이스라엘	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	02-739-9883 / 02-749-9192
베트남/인도	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	063-220-8924, 8917, 8935
싱가포르/핀란드	한국벤처캐피탈협회	02-3017-7061, 7070

* 사업관련 문의는 국가별 주관기관 담당자에게 문의

별첨 1

창업 여부 기준표

신청기업구분	상세 구분		창업여부	
개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	
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	창업아님	
		이종	창 업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-	창업아님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
			폐업 3년 초과	창 업
동종창업	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	
	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 업		
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			
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-	창 업		
법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
			폐업 3년 초과	창 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			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 업
	동종전환	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	
		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	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이종창업	-	창 업
			동종창업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또는 최대주주
	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		창 업
자회사 여부	법인주주(임원 포함)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소유		창업아님	
과점주주 여부	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초과 소유		창업아님	
회사형태 변경	동종유지		창업아님	
	이종		창 업	

- ※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(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-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, 동종 업종,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폐업 완료, 양도기업의 권리·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
- ※ 동종의 범위 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
- ※ 과점주주 :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
- ※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(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) : ①2020.10.8.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
 - "개인사업자 설립일이 '20.10.8. 이전이면서,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"한 경우 "창업"으로 판단
 ②영 시행(2022.6.29.)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

별첨 2**지원 제외 대상 업종**

- ▶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
NO.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일반유흥주점업	56211
2	무도유흥주점업	56212
3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4	그 밖에 1~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

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

별첨 3**동시수행 불가 사업목록**

- 해외실증 PoC
-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(TIPS 해외마케팅 지원사업)